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347 |
|----------|-----|

2023. 7. 21.(금)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정일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7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7월 14일

-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일 의원)

가. 제안사유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을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 및 청소년의 날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안 제4조**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에 관한 것으로, 도지사는 청소년이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 확보에 노력하도록 명시하여 실행력 제고를 도모하였음.

- 안 제7조는 매년 5월 셋째 주를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으로,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서는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음.
- 안 제10조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인프라를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활동 유도 및 주체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 및 청소년의 날은 청소년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거리 조성)**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활동 주간 등)** ①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은 매년 5월 셋째 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시·군, 각급 학교,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청소년이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 확보 노력(안 제5조)
-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활동 주간을 지정함으로써 각종 행사를 개최(안 제7조)
- 청소년활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8조)

## 3. 관련조문

-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 제7조(청소년활동 주간 등)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2027년(5년간)
-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 기시행중인 '2023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2024년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 균특회계 대상사업('26년까지 보전)으로 2027년 사업비는 4개년 총사업비의 평균액 중 도비 지원금 30%\*로 추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의함
  - ※ '26년 이후에는 사업수요 및 예산투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현재 청소년활동 주간에 시행되는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도 주좌주관에 한함)
- 청소년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 공모사업으로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사업비 증감

## 나. 추계 결과

### ○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 ('23년) 11,254백만원(도비 9,003, 시군비 2,251)
  - 6개 시군, 6개 시설(문화의집 4, 수련관2)
- ('24년) 9,831백만원(도비 7,865, 시군비 1,966)
  - 5개 시군, 6개 시설(문화의집 3, 수련관 2, 수련원 1)
- ('25년) 8,465백만원(도비 6,772, 시군비 1,693)
  - 3개 시군, 4개 시설(문화의집 3, 수련원 1)
- ('26년) 2,500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500)
  - 5개 시군, 6개 시설(문화의집 3, 수련관 2, 수련원 1)
- ('27년) 8,012백만원(도비 2,404, 시군비 5,608)

### ○ 청소년활동 주간에 시행되는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

-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 28,000천원
  -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
  - (관련예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사업 : 2023년도 155,450천원)

### ○ 청소년활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 : 6개 단체, 29,000천원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민소통과 예산) : 4단체, 13,5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 균특비 80%, 시군비 20% ※2027년 제외
- 청소년활동 주간에 시행되는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 : 도비 100%
- 청소년활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
    - (23) 도비100%, ('24 이후)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도비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br>(2023년) | 2차년도<br>(2024년) | 3차년도<br>(2025년) | 4차년도<br>(2026년) | 5차년도<br>(2027년) | 계          |            |
|-------------------------|-----------------|-----------------|-----------------|-----------------|-----------------|------------|------------|
| <b>세 출</b>              | 9,073,500       | 7,935,500       | 6,842,500       | 2,070,500       | 2,474,500       | 28,396,500 |            |
| 공공청소년수련시설<br>기능보강       | 9,003,000       | 7,865,000       | 6,772,000       | 2,000,000       | 2,404,000       | 28,044,000 |            |
| 충청북도청소년<br>페스티벌         | 28,000          | 28,000          | 28,000          | 28,000          | 28,000          | 140,000    |            |
| 청소년수련활동<br>프로그램 운영      | 29,000          | 29,000          | 29,000          | 29,000          | 29,000          | 145,000    |            |
| 비영리민간단체<br>공익활동 지원      | 13,500          | 13,500          | 13,500          | 13,500          | 13,500          | 67,500     |            |
| <b>재원 조달</b>            | 9,073,500       | 7,935,500       | 6,842,500       | 2,070,500       | 2,474,500       | 28,396,500 |            |
| 의존<br>재원                | 소 계             | 9,003,000       | 7,865,000       | 6,772,000       | 2,000,000       |            | 25,640,000 |
|                         | 보전금<br>(균특회계)   | 9,003,000       | 7,865,000       | 6,772,000       | 2,000,000       |            | 25,640,000 |
|                         | 지방교부세           |                 |                 |                 |                 |            |            |
| 자체<br>수입                | 소 계             | 70,500          | 70,500          | 70,500          | 70,500          | 2,474,500  | 2,756,500  |
|                         | 지방세             | 70,500          | 70,500          | 70,500          | 70,500          | 2,474,500  | 2,756,500  |
|                         | 세외수입            |                 |                 |                 |                 |            |            |
| 지방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시·군비                    | 2,251,000       | 1,966,000       | 1,693,000       | 500,000         | 5,608,000       | 12,018,000 |            |
| 기 타<br>(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                 |                 |                 |                 |                 |            |            |